#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·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9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 문진석·권영진·안철수

염태영 • 윤영석 • 김은혜

민홍철 • 복기왕 • 김동아

전용기 • 박용갑 • 김문수

한정애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·공사감리 업무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,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·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고시하여 공공은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은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와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찰 등에 있어 담합 및 금품수수 등 부당공동행위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음.

건축사 업무의 책임에 비해 비정상적인 업무와 대가로 인하여 설계 과정이 축소되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고, 덤핑 및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.

이에 공공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공히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 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). 법률 제 호

###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의 제목 "(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)"을 "(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장하기"를 "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"로, "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"을 "제3항"으로, "대가 기준"을 "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"를 "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(準用) 한다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축사 대가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3(공공발주사업 등에 대	제19조의3(건축사의 업무범위 및
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	<u>대가기준)</u> ①
<u>기준)</u>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	
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	
<u>보장하기</u> 위하여 다음 각 호의	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u>건</u>	<u> 지하기</u> <u>제3</u>
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	<u>ठ</u> ो
따라 고시한 <u>대가 기준</u> 을 적용	건축사의 업무범위
하여 발주하여야 한다.	<u>및 대가기준</u> .
1. ~ 4. (현행과 같음)	1. ~ 4. (생 략)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	②
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	
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	
따라 고시한 <u>대가 기준을 활용</u>	건축사의 업무범위
<u>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</u> .	및 대가기준을 준용(準用) 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